



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2014년 회계연도 「과년도 체납 시세 및 구세 징수포상금」 지급
 원인행위

1. 2014년 회계연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과년도 체납 시세 및 구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,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.12.31까지 지급이 불가하여
2.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회계연도 마감전에 원인행위를 시행하고, 2015.2.28.까지 체납세액 징수금액을 확인 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.

가. 체납시세

- 1) 배 정 액 : 71,419,170원
- 2) 집 행 액 : 59,335,690원
- 3) 미집행액 : 12,083,480원(원인행위 금액)
- 4) 집 행 일 : 2015년 2월 28일 이전
- 5) 사 유 : 2014년 4/4분기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예산액이 2014년 12월에 배정됨에 따라 2015년 1~2월 중 「성북구 세입징수 공적심의 위원회」 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자 함
- 6) 예산과목 : 조세정의실현, 강도 높은 체납시세 징수지원, 시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, 포상금

나. 체납구세

- 1) 배 정 액 : 11,764,000원
- 2) 집 행 액 : 9,402,480원
- 3) 미집행액 : 2,361,520원(원인행위 금액)
- 4) 집 행 일 : 2015년 2월 28일 이전
- 5) 사 유 : 2014년 12월 말까지의 체납구세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징수내역 확인 및 징수보고서 작성이 2015년 1월 20일 이후에 가능
- 6) 예산과목 : 자주재원확충, 세입목표달성, 체납시세징수활동 강화 포상금, 포상금. 끝.

주무관

이은주

38세금징수1담당 **김범태**

세무1과장

최상균

기획경제국장

12/17
김석진

협조자

세입총괄담당

김형원

시행 세무1과-21535 () 접수 ()

우 136-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
전화 2241-4112 / 전송 2241-6579 / 대시민공개